

##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득하여 사립 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실험, 실습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 재산을 당해 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차량·중기 :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2. 항공기 : 비행 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3. 임 목 : 조립, 수종갱신 등 입학계통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되는 것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 (면제신청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교육법(부분발췌)

제82조 (설립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

② 법인 또는 사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설립, 경영할 수 있다.

제83조 (국·공·사립의 구분) ①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국립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